퇴직연금보험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무배당)[DB]

사용자 보관용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보험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시 약정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퇴직연금 콜센터(1588-3115)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내용

구 분	내 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DB(*)·퇴직연금보험(무배당) 사용자(계약자)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자산관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계약자)
상품개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 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율보증기간: 1 / 2 / 2.5 / 3 / 5년 또는 일단위 만기지정식에 한하여 11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이에서 지정한 특정일까지의 기간 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적립되며,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상기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amsunglife.com > 전체상품 > 퇴직연금상품 > 원리금보장형 상품 > 이율보증형)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 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중도해지에 관한 사항</td><td>- 중도해지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시점(재설정된 경우 재설정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 중도해지이율 계산 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table>
<tr><th rowspan="2"></th><th colspan="7">경과기간</th></tr>
<tr><th>90일 미만</th><th>180일 미만</th><th>1년 미만</th><th>2년 미만</th><th>3년 미만</th><th>4년 미만</th><th>5년 미만</th></tr>
<tr><td>중도 해지이율</td><td>연 0.1%</td><td>연 0.5%</td><td>연 1.0%</td><td>「적용이율 50%」와 「연 1.0%」 중 높은 이율</td><td>「적용이율 50%」와 「연 1.0%」 중 높은 이율</td><td>「적용이율 60%」와 「연 1.0%」 중 높은 이율</td><td>「적용이율 70%」와 「연 1.0%」 중 높은 이율</td></tr>
</table>
- 단, 다음의 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입자)의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근로자(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 하는 경우
③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④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만기일 ± 3영업일」 이내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td></tr>
<tr><td>만기재설정</td><td>사용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 설정을 위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회사가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한 날(이하, "재설정한 날" 이라고 합니다)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미만) 단위보험의 경우에는 이율보증기간이 1년인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미만)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td></tr>
</table>

2 기타 안내사항(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예금자 보호여부</td><td>비대상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청약철회</td><td>※ 청약철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보험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3호의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
※ 상품특성 상 청약철회 시 반환되는 금액(납입한 부담금)보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것과의 유불리를 판단해보시고 청약철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부담금 등을 돌려드립니다. 단,「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인터넷 또는 서면」,「회사의 고객창구」,「전화(녹취) 」,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td></tr>
</table>

준법감시필 제25-3242(특화상품P, 2025.10.22~2027.10.21)

구 분	내 용
위법계약 해지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락금지 요구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금지요구 절차 및 방법] ・수신자부담전화 : 080-331-3114 ・금융권 두낫콜 : www.donotcall.or.kr ・홈페이지/모바일 접수 : 로그인 > 개인정보관리 > 마케팅동의 및 철회 ・콜센터 : 1588-3114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주요내용 안내확인 (설명 받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란에 (∨)표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확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QR 코드를 통해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보험 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

설 명 내 용
상품유형, 가입대상, 상품개요, 상품구조, 보험기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만기재설정
예금자보호여부,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회사는 고객(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객은 설명받는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보호 또는 비보호)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명 주 소 대 표 자 (고객명)	명판	[거래인감] (서명)

영업담당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서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명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업담당자	[소속]	[성명]	(서명·날인)

준법감시필 제25-3242(특화상품P, 2025.10.22~2027.10.21)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퇴직연금보험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무배당)[DB]

회사 보관용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보험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시 약정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퇴직연금 콜센터(1588-3115)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내용

구 분	내 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DB(*)·퇴직연금보험(무배당) 사용자(계약자)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자산관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계약자)
상품개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 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율보증기간: 1 / 2 / 2.5 / 3 / 5년 또는 일단위 만기지정식에 한하여 11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이에서 지정한 특정일까지의 기간 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적립되며,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상기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amsunglife.com > 전체상품 > 퇴직연금상품 > 원리금보장형 상품 > 이율보증형)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 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준법감시필 제25-3242(특화상품P, 2025.10.22~2027.10.21)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중도해지에 관한 사항</td><td>- 중도해지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시점(재설정된 경우 재설정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 중도해지이율 계산 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table>
<tr><th rowspan="2"></th><th colspan="7">경과기간</th></tr>
<tr><th>90일 미만</th><th>180일 미만</th><th>1년 미만</th><th>2년 미만</th><th>3년 미만</th><th>4년 미만</th><th>5년 미만</th></tr>
<tr><td>중도
해지이율</td><td>연 0.1%</td><td>연 0.5%</td><td>연 1.0%</td><td>「적용이율 50%」와 「연 1.0%」 중 높은 이율</td><td>「적용이율 50%」와 「연 1.0%」 중 높은 이율</td><td>「적용이율 60%」와 「연 1.0%」 중 높은 이율</td><td>「적용이율 70%」와 「연 1.0%」 중 높은 이율</td></tr>
</table>
- 단, 다음의 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입자)의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근로자(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 하는 경우
③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④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만기일 ± 3영업일」 이내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td></tr>
<tr><td>만기재설정</td><td>사용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 설정을 위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회사가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한 날(이하, "재설정한 날" 이라고 합니다)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미만) 단위보험의 경우에는 이율보증기간이 1년인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미만)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td></tr>
</table>

2 기타 안내사항(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예금자
보호여부</td><td>비대상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청약철회</td><td>※ 청약철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3호의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
※ 상품특성 상 청약철회 시 반환되는 금액(납입한 부담금)보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것과의 유불리를 판단해보시고 청약철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부담금 등을 돌려드립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인터넷 또는 서면」, 「회사의 고객창구」, 「전화(녹취) 」, 「기타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td></tr>
</table>

준법감시필 제25-3242(특화상품P, 2025.10.22~2027.10.21)

구 분	내 용
위법계약 해지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락금지 요구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금지요구 절차 및 방법] • 수신자부담전화 : 080-331-3114 • 금융권 두낫콜 : www.donotcall.or.kr • 홈페이지/모바일 접수 : 로그인 > 개인정보관리 > 마케팅동의 및 철회 • 콜센터 : 1588-3114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준법감시필 제25-3242(특화상품P, 2025.10.22~2027.10.21)

주요내용 안내확인 (설명 받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란에 (∨)표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확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QR 코드를 통해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보험 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

설 명 내 용
상품유형, 가입대상, 상품개요, 상품구조, 보험기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만기재설정
예금자보호여부,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회사는 고객(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객은 설명받는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보호 또는 비보호)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명 주 소 대 표 자 (고객명)	명판	[거래인감] (서명)

영업담당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서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명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업담당자	[소속]	[성명]	(서명·날인)

준법감시필 제25-3242(특화상품P, 2025.10.22~2027.10.21)